

● 제323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(의안번호 : 1687)

2024. 4. 29.

보건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[황유정 의원 대표 발의]

의안번호 1687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경위

가. 제안자 : 황유정 의원 외 15명

나. 발의일자 : 2024년 04월 02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04월 08일

2. 제안이유

- 난임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, 다수의 환자가 의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한방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음.
- 서울시는 2018년부터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어,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「한의학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제1항제1호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모자보건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 : 2024. 04. 12.~ 2024. 04. 16.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는 2018년부터 ‘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’을 시행해오고 있으나¹⁾, 현행 조례에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임(아래 표 좌측 참조).
- 이에 본 개정안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범위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(안 제7조1항제1호)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아래 표 우측 참조).
- (‘공포 후 시행 전’ 조문에 대한 개정 포함) 단, 이번 개정안은 ‘현행 조례’의 조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, 2024년 3월 15일 공포되었으나 아직 시행일(2025. 1. 3.)이 도래하지 않은 해당 조례(아래 표 가운데 참고)에도 이번 ‘개정사항’이 반영될 수 있도록 ‘공포 후 시행 전’ 조문에 대한 별도의 개정문²⁾을 함께 만들어 옴.

현행	공포 후 시행 전 조례안 (서울특별시조례 제4646호 2024. 3. 15. 공포, 2025. 1. 3. 시행)	개정 조례안 (2025. 1. 3. 이전에 공포 시행 예정)
제7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	제7조(지원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	제7조(지원사업) ① - ----- -----

1) 자료: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(2024. 3.) 2024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계획. p5.

2) (공포 후 시행일 도래전 조례의 개정문) 서울특별시조례 제4646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지원사업”을 “지원사업. 이 경우 「한의약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현행	공포 후 시행 전 조례안 (서울특별시조례 제4646호 2024. 3. 15. 공포, 2025. 1. 3. 시행)	개정 조례안 (2025. 1. 3. 이전에 공포 시행 예정)
<p>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<u>지원사업</u>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유산·사산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유산·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·정보제공 지원사업</p> <p>2. 유산·사산부부에 대한 상담·심리 지원사업</p> <p>3. 그 밖에 유산·사산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	<p>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지원사업.</u> <u>이 경우 「한의약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.</u>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가.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(안 제7조제1항제1호)

- “한의학분야에서는 2009년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한의사회와 협력하여 한방난임치료사업들을 제공해오고” 있음³⁾.
- “각 지역의 한방난임치료사업 성과가 축적되면서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치료비를 지원하고” 있는 상황임⁴⁾.
- 몇 가지 <광역자치단체의 조례>를 살펴보면 ① 제주특별자치도, 대구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 한방 또는 한의학 난임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, ② 인천광역시에서는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(다음 페이지 참조).

<지자체 한방난임치료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>

3) 김윤환, 임병목(2021), 수도권 한방난임치료지원 조례 제정의 정책 확산 영향 요인 분석,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25호 제3호, 117-124.

4) 김윤환, 임병목(2021), 수도권 한방난임치료지원 조례 제정의 정책 확산 영향 요인 분석,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25호 제3호, 117-124.

연번	지자체	조례명	지원대상	지원내용	제정연도
1	제주도	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	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(사실혼 포함)	1.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,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.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상담, 교육 및 홍보	2020년
2	대구광역시	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	명시 X	1.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,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. 한방난임치료 상담·교육 및 홍보	2021년
3	경기도	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	난임진단을 받은 부부(사실혼 포함)	1.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,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지원 2.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상담, 교육 및 홍보	2019년
4	인천광역시	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	난임진단을 받은 부부(사실혼 포함)	「한의약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	2020년

자료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검색일 2024년 4월 10일 기준).

○ 하지만 서울특별시는 조례에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. 이에 본 개정안은 이 조례에 한방난임치료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.

- 이러한 이유는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사무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⁵⁾에 해

5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<생략>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당하고,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⁶⁾고 규정하고 있음.

- 또한 이미 “난임 지원사업은 정부가 추진한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”되었으며, 이러한 “재정분권의 취지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”⁷⁾ 있음.
- 또한,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서울특별시는 2018년부터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, 이러한 서울시의 ‘한방난임 치료비 지원’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자연임신성공률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.

<2024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개요>

· 대 상:	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(또는 사실혼부부)(원인불명의 난임) 여성나이: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서울시민 ※ 한의약 난임치료기간(3개월)동안+관찰기간(2개월) 의과 난임시술비 중복지원 불가
· 치료기간:	1회 치료기간 총 5개월 [3개월(집중치료) + 2개월(관찰기간)]
· 내 용:	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협약비용의 90% 지원(120만원) ※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% 지원
· 지원횟수:	신청일 기준 1인 생애 최대 2회(연 1회)
· 사업신청:	주소지 관할 보건소(부부동시 치료시 여성 주소지)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
· 구비서류	-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(난임시술병원, 산부인과 전문의), 사전 선별지 ※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(단, 남성 단독 시, 여성 진단서 반드시 제출해야 함)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3. ~7. <생략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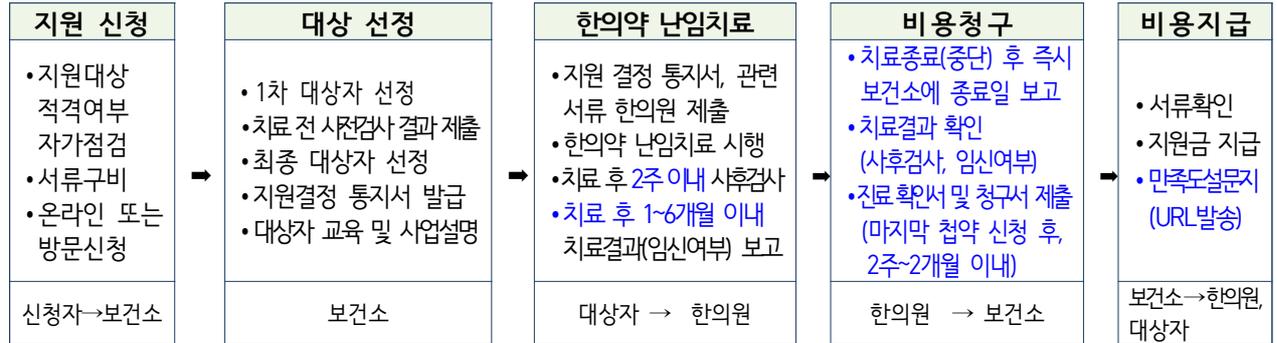
6)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7) 김태환(2022), 우리나라의 난임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, 사회법연구 제47호, 531-565.

- ※ 사전선별지 : 임신출산정보센터(<https://seoul-agi.seoul.go.kr/smom>)에서 사전 선별 자가 점검
- (공통) CBC, LFT, BUN/Cr (남)정액검사 (여)풍진면역, AMH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(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), 사실혼 증명서류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 확인서(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 필요시)

❖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흐름도



자료: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(2024), 2024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매뉴얼, p1.

<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추진실적>

연도	참여자수* (명)	치료증감수 (명)	임신성공률** (%)	지정한의원 (개소)	사업전반 자문(건)	사업만족도 (%)
2023	286	229	14.91% (17명/114부부)	360	307	87.6
2022	328	207	19.16% (23명/120부부)	383	171	82.1
2021	249	203	17.39% (20명/115부부)	250	21	85.5
2020	226	117	14.92% (10명/67부부)	215	57	88.2

*참여자수(명): 전년도 이월자 수 + 당해연도 신규자 수

**임신성공률(%): (출산아 수/치료완료 부부 수)×100

자료: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(2024), 2024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계획, p6.

- 참고로, 최근 국회에서도 「모자보건법」을 개정(일부개정 2024. 2. 6.)⁸⁾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.

8) 「모자보건법」 [시행 2024. 8. 7.] [법률 제20215호, 2024. 2. 6., 일부개정]

【제정·개정이유】

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,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 중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「한의약 육성법」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.

※ 집행기관 의견(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)

- 집행기관 역시 이번 조례개정으로 우리시가 2018년부터 지속 추진중인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의 명시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 조례 개정예 동의함.

문 의 처

우현재 입법조사관 (02-2180-8155)